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❶ | 202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9 • 특집 ❷ | 대화법 ① 우리 부부 살리는 존중 대화법

15 • 가정폭력상담실

18 • 특별기고 |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20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㉓

22 • 어떻게 할까요

25 • 좋은 책

공정하다는 착각

26 • 결혼과 인생(216) 영화 이야기

야구소녀 _ 김용언

28 • 실습소감문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6 •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보령개화예술공원의 다알리아〉



인구 데드크로스의 시대에 다시 출산율을 생각하며,
.....

정책의 방향성과 관점에 대한 근본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해가 바뀌어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살얼음판을 딛고 가듯 전 국민이 노심초사하는 나날들이지만 어느 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그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연하게 삶을 지속하는 것, 이것만이 이 괴로운 상황을 견뎌내게 하고 진정한 우리의 삶을 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것 같아도 시간은 흐르고 계절 또한 바뀌어 우리는 다시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들이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인생과 세상의 진리가 이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진리 앞에서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상담소의 걱정 역시 깊어 갑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상담소는 그 심각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해마다 한 두 번씩 바로 이 지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걱정을 나누고 진정한 해결책의 모색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고사하고 상황은 더욱 나빠지니 정부 당국은 물론 국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더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9023명으로 이는 2019년 12월 31일 5184만 9861명보다 0.04%포인트(2만838명) 감소한 것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전년도보다 10.65%(3만2882명)나 감소했는데,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 명 선도 무너진 것입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10%(9269명) 증가한 30만 7764명으로 출생자를 웃돌았습니다. 이른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 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로 하락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르도록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이듬해인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로 2011~2015년 2차, 2015~2020년 3차와 가장 최근 발표된 4차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5년 주기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 골자는 아동수당 등을 통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지만 드러나는 효과는 없고 오히려 그간 출산율 예측은 대부분 빗나갔습니다. 2006년 2조원이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난해 20배 이상 늘어 45조를 기록했지만 출산율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현 상태라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 합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출산 4차 대책 발표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총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저출산 대책에 투입됐습니다. 지원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 21.1% 증가, 총 209조원에 달했습니다.

정책도 세웠고 예산도 아낌없이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의 늪은 나날이 깊어만 갑니다. 진정 문제에 대한 관점과 대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해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보도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임신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내용이 임신 35주차 임신부들에게 출산을 앞두고 냉장고 정리, 남편이나 가족들을 위한 밑반찬이나 간편식 준비, 가족들 옷 미리 챙기기 그리고 출산 후 체중관리 등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나 임신, 출산,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 당국의 의식 수준이 참으로 참담할 지경이었습니다. 지엽말단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전근대적 의식이 정책당국의 실무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으니 어떻게 21세기에 맞는 정책과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회 모든 분야의 문제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의 문제, 출산과 육아, 보육과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가족정책 그리고 주거와 교육,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등 원점에서부터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몇 조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개인과 가정에 이르면 몇 푼에 불과한 현금성 복지, 일회성 이벤트 같은 대책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를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삶에 비추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단기의 체계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근간을 지키고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제대로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정부 당국과 정책 담당자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립 65주년의 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 모든 가족구성원이 상담소와 함께 법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올해 2021년 창립 65주년의 해를 맞이하였다. 195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상담기관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한 상담소는 언제나 한 발 앞서 가정문제를 진단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면접상담의 임시중지 시에는 인터넷 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의 온라인 비대면 상담에 집중하고 프로그램 또한 최대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적절하게 대처해 왔다. 올해도 변함없이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는 물론 이의 연장선에서 가족법 개정운동에 앞장설 것이며 서울가정법원 등의 출장상담과 인터넷 상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률구조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더욱 활성화 하여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한 가운데 법률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임상실습 및 출장 법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법 교육을 활성화하여 법의 생활화에 적극 나서고 사회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및 출판·홍보 사업도 변함없이 충실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2020년 11월 정기 후기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사업계획으로, 월별 계획은 상담소 내외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법률구조 사업

1)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야간상담 등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상담을 더욱 충실하게 하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다문화 가정으로 대상으로 한 영어법률상담, 심리상담을 확대한다. 특히 비혼모시설,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쉼터, 사회복지 기관 등의 순회상담 확대를 비롯해 법원위탁 협의이혼전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에 관한 소송구조와 가정폭력피해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소송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특히 전국업무협력기관(구 지부)소송구조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2)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교육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개별·부부·가족상담 및·음주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인 등지고실 및 부부캠프와 피해자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 등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상세한 프로그램을 ‘가정폭력상담실’ 지면에 소개하였다.

- 1월 대화법 동영상 편집본 제작
- 3월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증간
- 4월 행복찾기 부부캠프(1)
- 10월 가정폭력 전문가 간담회
- 11월 행복찾기 부부캠프(2)
- 가정폭력상담사례집 III 발간
- 12월 라오니 캠프

3) 법률계몽사업

법의 생활화와 가정 내 양성평등,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생활법률강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법률해설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 널리 홍보하며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매체 및 본소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계몽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한 상담소의 법률상담에 관한 라디오 광고를 지속하며, 페이스북 등의 SNS 및 유튜브를 통한 홍보 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법 개정 및 제정 운동

가족법 개정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이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심포지엄, 간담회, 토론회 등

을 통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가족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하지 못한바 올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또한 개정 가족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월 가족법개정 자문위원회

교육 및 예방·치료사업

가정문제의 예방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하고, 법무부 지정 법문화진흥센터로써 법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출장 법 교육, 전문가를 위한 전국순회 교육, 교원직무연수, 학생들을 위한 법 교육 등을 더욱 확대 실시. 또한 2개월에 한 번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 가정 특히 비혼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법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나 대면 프로그램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또한 법대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임상교육, 사회복지학과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임상실습, 대학생 봉사학점 이수 등도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 3월 직원재교육(1)
- 4월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 법교육(1)
- 5월 노숙인 신용회복 관련 법교육(1)
- 6월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1)
- 7월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2)
- 직원재교육(2)
- 9월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 법교육(2)
- 직원 대상 부패방지 및 폭력(성희롱, 성매매 등),

직장 내 괴롭힘, 아동학대예방 교육

직원재교육(3)

10월 노숙인 신용회복 관련 법교육(2)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 법교육(3)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3)

11월 직원재교육(4)

전화 자원봉사자 모임 및 교육

조사 · 연구 사업 및 심포지엄 개최

상담을 통해 드러난 가정의 문제를 근거로 조사 · 연구를 활성화하여 이를 가족법 개정이나 제정으로 이끌어서 가정의 민주화 나아가 가족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심도 깊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월 이혼 및 부부갈등 상담통계 분석

파산 면책 소송구조 분석

3월 양육비 소송구조 분석

4월 심포지엄(1)

다문화가정 상담통계 분석

위탁가정 소송구조 분석

5월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 분석

7월 2020년도 상담통계집 발행

10월 심포지엄(2)

자료실 운영

법률, 가정, 여성 관련 전문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 자료실로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수종을 확대 하며 서고 및 각종 파일과 행정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출판 · 홍보 사업

2020 개정 가족법 홍보 브로슈어 발행 등 가족법 개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법의 생활화를 위한 출판 및 홍보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전산

상담 프로그램 및 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본부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작업, 상담소 홍보를 위한 웹 메일 편집 및 발송,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상담소 홍보를 연중 지속한다.



특집 ②

대화법 - 비폭력대화 동영상에서* ①

꽃보다 대화 <1편>

우리 부부 살리는 존중 대화법



전문가 내레이션 :

김 병 후 원장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본소 이사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 아시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말은 큰 힘을 가집니다. 반대로,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은 서로의 관계를 해치게 되지요. 가정폭력사건도 신체적 폭력 외에 모욕적인 말이나 욕 등 정서적 폭력이 수반됩니다.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

두, 갈등 상황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상처 받지 않으면서 대화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높습니다.

이제 상처를 주는 대화 대신에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1. 대화, 메시지와 의미는 다르다

“대화란 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담은 말이 비난, 비판, 강요, 비교의 말로 표현될 때는 상대방이 내 마음 속의 진심을 듣지 못하고, 내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서로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이해와 연결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한 부부의 대화를 볼까요?”

* 편집자 주) 본소는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대화법 교육 동영상을 기획, 제작하였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하여 서동일 감독에 의해 11월에 제작 완료되었으며, 현재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요약본을 제작하여 본소 유튜브를 통해 널리 제공하고 있다. 이 대화법은 비단 가정폭력 관련자들 뿐 아니라 갈등상황에 놓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비폭력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고는 동영상의 시나리오를 읽기 쉽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사례

- **아내** (타박하듯이) “당신은 너무 고집이 세!”
- **남편** (원망하듯이) “당신은 자기밖에 몰라.”

“네. 방금 부부가 한 말은, 말로 표현된 ‘메시지’입니다. 그 속뜻은 따로 있지요.”

- **아내** (부탁하듯이) “당신이 내 의견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 **남편** (부탁하듯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면 좋을 텐데.”

“네. 이것이 표현된 ‘메시지’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죠. 우리는 대화할 때 겉으로 표현되는 말 뒤에 말하는 사람의 ‘숨겨진 욕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의 메시지와 숨겨진 의미는 다르다]

2. 비폭력대화 소개

“서로 존중하면서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대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대화는 꽃의 ‘가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하려면 꾸준한 연습과 반복이 필요하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갈등상황에 있는 부부에게 ‘비폭

력대화’ 모델로 훈련한 결과, 부부관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욕 같이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폭력적인 대화를 중단하고,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는 타인과 자연스러운 유대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으로,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고안하였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법, 비폭력대화

사례 1 : 비폭력대화 모델 4단계

남편 출근하러 나가려는 중, 아내 쓰레기봉투 들고 나오는 중

- **남편** “나 오늘 회식 있어.”
- **아내**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인데 또 밤 12시 넘겨서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지난번에도 그래서 내가 혼자 다 하느라고 고생했잖아. 자기는 자기 생각 밖에 안하지?”
- **남편** (또 시작이군, 하는 표정으로 한숨)
- **아내** “오늘 당신 또 회식 있다고 하는데 정말 회식을 하는 건지 아닌지 알게 뭐야? 오늘도 나 혼자 분리수거하게 내버려 두면 당신 정말 사람도 아니!”

“비폭력대화 모델은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관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거죠.

- **아내** “오늘 분리수거 날인데 지난번 당신이 ‘12시’가 넘어 들어왔을 때 ‘나 혼자’ 분리수거했거든.”

[관찰 :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2단계는 느낌을 말합니다. 외부나 내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느낌입니다.

●아내 “그때 너무 힘들었고, 서운했어.”

[느낌 : 어떤 자극에 대해 심신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말한다]

“3단계는 느낌 뒤에 있는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 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가 바로 욕구입니다.”

●아내 “당신이 힘든 일을 같이 도와서 했으면 해.”

[욕구 : 느낌 뒤에 숨겨진 솔직한 욕구를 말한다]

“마지막 4단계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내 “그러니까 오늘 당신 회식하더라도 10시까지는 들어와서 나랑 같이 분리수거할 수 있을까?

[부탁 :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한다]

“비폭력 대화의 4단계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기억하세요!”

비폭력대화의 4단계 : 관찰, 느낌, 욕구, 부탁

2. 사례 2 : 비폭력대화로 솔직하게 말하기

“상대방을 존중하는 비폭력 대화는 갈등상황에서 평화로운 대화로 이끌어줍니다.

특히 부부처럼 친밀한 사이에서는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폭력 대화의 원칙은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듣는 것’입니다.”

시계 밤 12시가 넘었다.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남편, 잠자다가 나와 무심한 표정으로 맞이하는 아내

●남편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들어왔는데 따뜻한 밥상 하나 안 차려주나?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 오는지 관심이 없어. 정말 무심한 사람이야.”

●아내 (기막힌 표정으로 남편 보면서 속으로)
“뭐? 연락도 없이 늦은 게 누군데?”

“이럴 때 아내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화병이 나가나 한꺼번에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거구요. 이 상황에서 아내는 어떻게 비폭력대화로 할 수 있을까요?”

“1단계는 관찰입니다.”

[관찰 : 있는 그대로 말하기]

●아내 “당신이 나에게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오는지 관심도 없는 무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관찰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나의 평가나 판단, 해석이 들어가지 않고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2단계는 느낌입니다.”

[느낌 : 그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기]

●아내 “나는 억울하고 속상했어. 그리고 슬프기도 했어.”

“느낌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분인지를 말하는 건데요, 느낌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아닌지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3단계는 욕구입니다. 왜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욕구 :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말하기]

●아내 “왜냐하면 나도 하루 종일 직장생활하고 집에 와서 살림 하고 아이들 챙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주길 바랐어. 내가 밤늦게 들어온 당신한테 식사했냐고 물어보지 못하더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한번쯤은 넘어가 주었으면 했어.

“아내는 인정과 위로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충족되지 못해서 속상하고 슬펐던 거죠.”

“4단계는 부탁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나서 연결부탁을 하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탁 : 연결부탁으로 상대방을 대화에]

●아내 “내 얘기 듣고 당신 마음은 어때? 당신 생각을 듣고 싶어.”

“내 얘기를 마친 후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는 연결부탁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면서 들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례 3 : 비폭력대화로 솔직하게 말하기 반복 연습

[관찰] ●아내 당신이 나에게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오는지 관심도 없는 무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낌] 나는 억울하고 속상했어. 그리고 슬프기도 했어./

[욕구] 왜냐하면 나도 하루 종일 직장생활하고 집에 와서 살림 하고 아이들 챙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주길 바랐어. 내가 밤늦게 들어온 당신한테 식사했냐고 물어보지 못하더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한번쯤은 넘어가주었으면 했어./

[부탁]

내 얘기 듣고 당신 마음은 어때?

당신 생각을 듣고 싶어.

“비폭력대화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폭력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공감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렇게 말한 속마음은 뭘까 서로 공감하며 들어주는 거죠.”

사례 4 : 비폭력대화로 공감하며 듣기

●아내 내 얘기 듣고 당신 마음은 어때? 당신 생각을 듣고 싶어.

* 공감으로 듣기

●남편 당신 말을 듣고 보니

[공감적 추측] 당신도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남편의 관찰] 내가 밤늦게 들어와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지 않았다고 투정부려서,

[남편의 느낌] 미안한 마음이 드네.

[아내의 욕구 추측] 앞으로는 당신과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아내의 부탁 추측] 내가 저녁식사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도록 노력할게.

[남편의 욕구] 나는 당신이랑 같이 뭐라도 먹으면서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이야기하며 위로받고 싶었어.

당신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으면 했던 거지.

[남편의 욕구 추측] ●아내 당신은 당신이 힘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나랑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싶었던 거구나?

●남편 그렇지.

사례 5 : 소통 방해 습관을 공감으로 바꾸기

●아내 “난 살면서 아무 것도 해 놓은 것이 없어!”

“아내의 이런 말에 남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 남편 (1) 당신 나이에 한번쯤은 다 그래. 자기계발서 책을 보면 도움이될 거야. [조언, 충고]
 (2) 낙오자라니, 당신이 해 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바로 잡기]
 (3) 당신도 그래? 나도 요새 되는 일이 하나 없어 딱 죽고 싶다니까.[내 이야기 들려주기]
 (4) 그렇게 풀죽어 있지 마. 기운내서 이 상황을 한번 다르게 보자. [감정의 흐름 중지]
 (5) 당신 너무 나약해.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내 말 안 듣더니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빈정대기, 평가하기]
 (6) 됐어. 시끄러워. 이제 그만 해. [한 번에 잘라 말하기]

“이런 반응은 소통을 방해합니다. 아내의 말에 공감하는 대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아내 난 살면서 아무 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
 ●남편 ‘살면서 아무 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실망스러워? [느낌 추측]
 ●아내 응.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남편 요새 많이 힘들었구나.[느낌 추측]
 ●아내 응, 힘들어.
 ●남편 일들이 좀 잘 풀려서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으면 해?[욕구 추측]
 ●아내 그렇지.
 ●남편 어떻게 하면 당신이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을까?

사례 6 : 관계 보호하며 분노 표현하기

“부부 간에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 중의 하나는 분노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보호하면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보호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내 “남편이 저에게 ‘당신은 전업주부면서 애들 밥도 챙겨주지 않고 밖에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저녁 먹고 오는 거’라고 말했을 때 화가 났어요.”

- 노트 꺼내는 아내, 뭔가 쓰기 시작

“관계를 보호하면서 분노를 표현하려면 먼저, 내면작업을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비난의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거나 글로 써봅니다.

●아내 (속말) “매일도 아니고 한번 정도는 자기도 애들 밥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하니 화가 안나? 미리 전화로 부탁까지 했는데 자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과 하고 저녁약속 잡고 술 마시면서 나에게 뭐라고 하네? 남편은 이기적이야!”

- 쓴 노트를 읽어보는 아내

“다음은, 그 메시지를 천천히 되뇌어 보며 나의 생각과 조금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 생각을 정리하는 아내

●아내 (속말) “(약간 차분하게) 나는 남편이 한번쯤은 아이들 밥을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남편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은 비판적인 생각 뒤에 숨은 욕구를 생각해봅니다.”

- 남편 “남편이 한번쯤은 아이들 밥을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 그래, 나는 도움, 이해, 함께 하기의 욕구가 있어.
남편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 거는… → 그래, 나는 배려, 존중의 욕구가 있네.”

“이제 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말을 해봅니다.”

- [관찰] ●아내 “(먼저 관찰.) 당신이 나한테 ‘당신은 전업주부면서 애들 밥을 챙겨주지 않고 밖에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저녁 먹고 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 [느낌] (다음은 느낌.) 너무 서운해.
- [욕구] (다음은 욕구.) 나도 가끔은 동네 아줌마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밖에 활동이 있을 때 당신 도움을 받고 싶어.
- [부탁] (마지막은 부탁.)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은 어때?

“네, 아내가 비폭력대화로 솔직하게 잘 말했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남편의 솔직한 느낌과 욕구는 이것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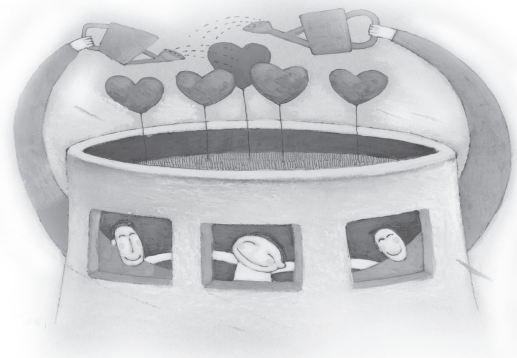
- 남편 “그런 말을 하는 나는 속상하고, 걱정이 돼.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에게는 편안함, 휴식, 여유, 돌봄, 따뜻함, 유대,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자, 아내가 남편의 말에 분노하는 대신, 공감으로 들으면서 관계를 보호하는 실전 대화로 바꿔볼까요?”

사례 7 : 관계 보호하며 분노 표현하기 반복연습

- 남편 당신은 전업주부면서 애들 밥도 챙겨주지 않고 밖에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저녁을 먹고 오는 거야?
- 아내 아이들이 걱정 돼?[남편의 느낌 추측]
- 남편 걱정 되지.
- 아내 애들 밥 잘 챙겨주고 당신이 집에 왔을 때 내가 따뜻하게 돌봐주면 좋겠어? [남편의 욕구 추측]
- 남편 (여유가 생겨서) 그렇지.
- 아내 근데 나도 어떤 때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만나서 수다도 떨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밖에서 활동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거든. 이럴 때 당신 도움 받고 싶어. [아내의 욕구]
- 남편 앞으로는 당신이 늦게 오는 날은 나도 시간을 내서 아이 돌보는 일을 같이 하도록 노력할 게.
- 아내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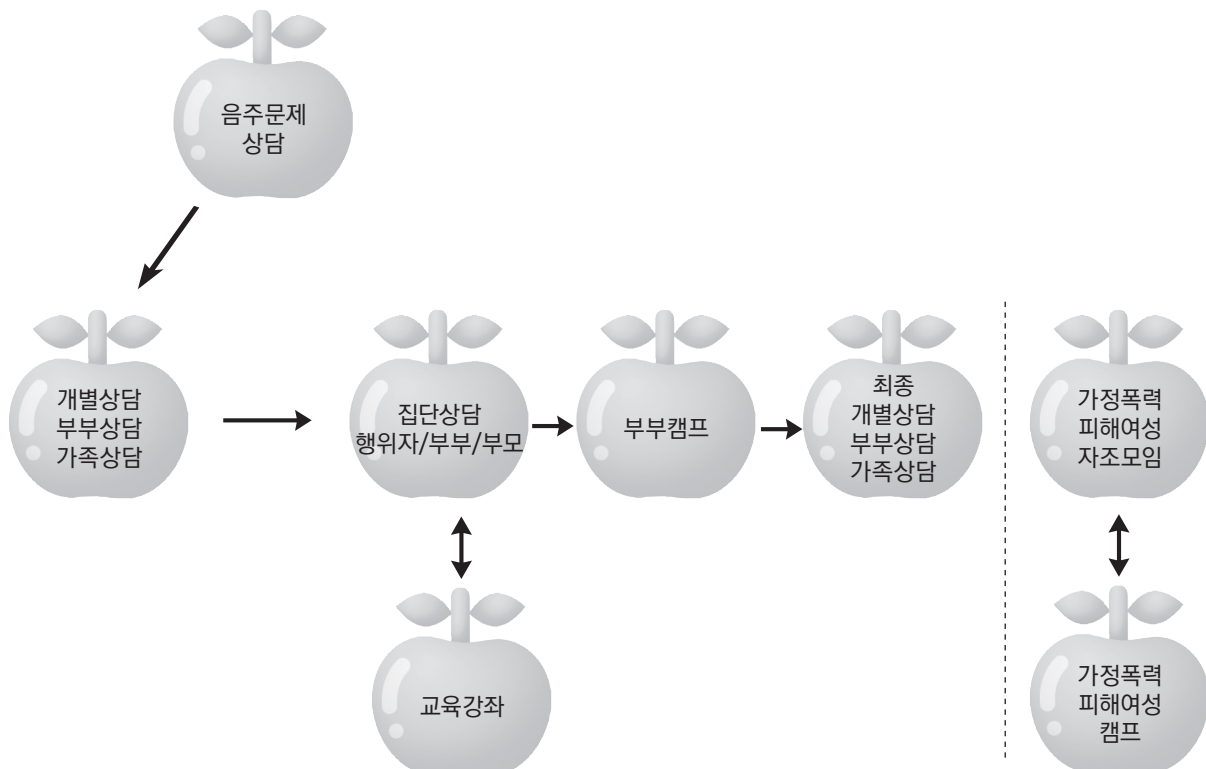
“결혼했다고 저절로 부부가 아닙니다.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결혼이고, 부부 사이 대화에 꼭 필요한 것은 사랑, 존중, 감사죠. 부부 살리는 존중 대화법, 비난, 판단, 비교, 강요, 명령 대신,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들어주면서 대화하세요.”





2021년에는 COVID-19에 대응하여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및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본소는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구조,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COVID-19에 대응하여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및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에 진행될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I.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폭력에 대한 책임 및 인식 개선,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재발방지 및 갈등해결방안 모색

- ▶ 일 시 : 연중
-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
- ▶ 진 행 : 본소 상담위원

II. 음주문제 집단상담

가정폭력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절주나 단주 등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 일 시 : 연 4회(각 6회기, 매회기 2시간)

날짜	1회 : 1/8, 1/15, 1/22, 1/29, 2/5, 2/19 (6회기) 2회 : 3/5, 3/12, 3/19, 3/26, 4/2, 4/9 (6회기) 3회 : 6/4, 6/11, 6/18, 6/25, 7/2, 7/9 (6회기) 4회 : 10/8, 10/15, 10/22, 10/29, 11/5, 11/12 (6회기)
회기별 주제	1회기 : 음주와 트라우마 2회기 : 알코올의 특성 3회기 : 음주와 성인아이 4회기 : 음주와 공동의존 5회기 : 음주와 회복 - 방향과 자원 탐색 6회기 : 음주와 회복 - 자기 들여다보기
시간	음주문제 피해자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음주문제 행위자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 대 상 : 음주문제가 폭력 및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
- ▶ 진 행 :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교수

III. 집단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인식, 집단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 모색 · 공유

집단상담 ①

-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 ▶ 진 행 :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서원 소장

집단상담 ②

-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및 배우자(부부)
- ▶ 진 행 : 정윤경 교수
(연세솔루션상담센터)
김희진 교수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정윤경 교수



김희진 교수

집단상담 ③

- ▶ 일 시 : 필요시
- ▶ 대 상 : 가정폭력의 문제가 있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

IV. 등지고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외래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본소 상담위원
- ▶ 일정 및 강의제목



황순찬 박사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2월 18일	감정의 재설계 - 분노에서 평온한 일상으로	본소 차연실 상담위원
3월 11일	화, 덜 내며 살아요.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 연구소)
4월 8일	기왕 낼 화, 잘 내며 살아요.	
5월 13일	화내는 사람, 웃으며 받아요.	
6월 10일	화와 친구하며 살아요.	
7월 8일	정신건강의 중요성 -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돌보는 노력	본소 차연실 상담위원
9월 9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황순찬 외래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월 14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11월 11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9일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V.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부부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 숙박프로그램

- ▶ 일 시 : 연 2회
(2021년 4월 10일 ~ 11일 / 11월 13일 ~ 14일)
- ▶ 대 상 : 사전에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부
- ▶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VI. 라오니 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 ▶ 일 시 :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 진 행 : 장희숙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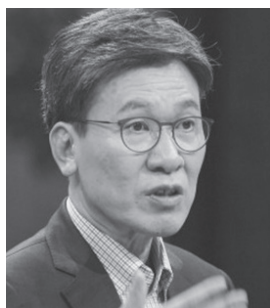
장희숙 교수

VII. 라오니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일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일일 캠프

- ▶ 일 시 : 연 1회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박 형 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몇 년 전 법원장으로 일하면서 법률강연을 할 때 여성단체 대표자에게 항의를 받았다.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한 여성을 쫓아내려는 남편을 판사가 어떻게 이기게 할 수 있나요? 지역만리에서 남자 하나 믿고 왔는데. 우리는 지역 여성 국회의원에게 힘써서 판결을 바로잡을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으로 알고 있었기에 찬찬히 설명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그 분은 알았다며 이렇게 마무리했다. “아 그래서 판사는 우리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군요. 하지만 불쌍한 여성을 법이 보호해야지요.”

스물두 살 베트남 여성 A씨는 2012년 2월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자리에서 만난 한국 남성 B씨와 혼인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열 네살 때 아이를 낳았는데 혼담이 오갈 때 B씨에게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A씨가 한국으로 온 2012년 7월부터 B씨의 어머니, 계부 C씨와 함께 살았다. 2013년 1월 A씨는 C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C씨를 고소하고 집을 나왔다. C씨에 대한 재판 도중 B씨는 A씨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궁했는데, A씨는 증인으로 출석

해서도 부인했다. 그러자 B씨는 2013년 8월 A가 출산경력을 숨겼다는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출산경력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B씨 손을 들어주었다. 여성단체는 A씨를 위해 운동에 나섰다. A씨 변호사는 ‘열세 살 때 납치되고 강간당해 임신한 후 폭력을 피해 친정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 남자가 아들을 데려가서 8년간 혼자 살았다.’고 밝히며, ‘어릴 때 당한 납치와 강간을 결혼당시에 고백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에 따라 A씨가 주장하는 사실이 맞다면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동 성폭력을 당해 출산했으나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기간 양육이나 교류가 없었다면, 출산경력과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서 명예나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다.” 파기

항소심에서는 A씨가 성폭력으로 임신했는지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와 국제결혼피해센터 사이에 공방이 치열했다. 법원은 'A씨가 납치당했지만 그 후 부모로부터 허락받고 사실혼관계에 들어가 임신했고, 남자가 죽을 때까지 2년간 동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 'A씨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혼인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B씨를 보호해야 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는 재상고했으나, 이번에는 대법원 문이 열리지 않았다.

판사의 법적 판단은 그 사건에서 구체적 사실(소전제)을 확정하고 적용할 법(대전제)을 검토한 후, 당사자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결론)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같은 것은 같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판사는 법이 규정하는 내용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밝히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 같은 성격의 사건이라면 어느 판사가 맡든 결론이 같아야 시민은 결론을 예견하고 재판을 믿을 수 있다. 다만 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으므로, 판사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를 수밖에 없는 개별 사건에서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구체적 타당성'도 아울러 추구해야 한다.

민법 제816조는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원은 초혼인 상대방에게 혼인이나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았다면 취소사유가 된다고 여러 번 판단했다. 이제 법 이론과 법률, 판례를 생각하며 A씨에 대한 혼인취소사건을 살펴본다. 첫째, 얼마나 A씨가 불쌍하고 B씨가 매정한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재판은 사람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이지, 사람의 도덕성은 법적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고 판사가 평가할 수도 없다. 둘째,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정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혼인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지 않은 것을 같게 보고 법적 안정성만 강조한 것

으로 부당하다.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랑과 신뢰로 성숙되는 결혼관계의 취소를 인정할지는 혼인 당시 말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 생활관계 등 구체적 사정도 함께 참작되어야 한다. 셋째, 출산경력이 고지할 의무의 대상인지는 당사자의 생각뿐만 아니라 혼인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가치관과 사회윤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건전한 사회통념을 반영해 혼인생활을 보장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연애와 출산 등 혼전경력에 대한 보통 사람의 생각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넷째, 성폭행으로 출산한 사실은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 약탈혼으로 시작된 부부관계가 지속되던 중 출산했더라도 열네 살 소녀가 진정으로 원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다섯째, 혼인하기 전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고백할 시간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사귀며 서로를 잘 알고 결혼한 경우와 국제결혼 중개업자 소개로 두세 번 만나 결혼한 경우는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여섯째, 혼인 취소사유와 이혼사유는 다르므로, B는 A가 결혼 후 오랫동안 출산경력 등을 알리지 않아 믿음이 깨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아동 약탈혼에 대해 다르게 보았고 다섯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써 A씨는 한국에서 6개월 혼인생활하고 4년 6개월 동안 소송하다가 2017년 7월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공감하고 연민하면서 결혼 전후 사정까지 살펴본 것은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한 것으로 타당하다. 다만 참작할 요소를 일부 빠트렸고 동남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의 실질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법감정상 그 결론이 명백히 부당하다면, 판사는 자세한 이유를 대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 그 점이 'AI 판사'와 다른 게 아닐까.

가족법개정운동과 한국가정률상담소(9)

제5차 가족법 개정과 호주제 폐지 (1999~2005) ②

2005년 3월 1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대연회장에서는 ‘호주제 폐지 축하연’이 열렸다. 이날 축하연은 지난 2000년 9월부터 호주제 폐지를 목표로 연대활동을 펼쳐온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가 역사적 과업을 이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등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간사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여성 전통 타악그룹 ‘동천’의 시작 공연으로 문을 연 축하식은 광배희 상담소 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인사말과 윤후정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총장, 김주수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김애실 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영상으로 보는 호주제 폐지운동, 상담소의 중창단과 가수 유연이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광 소장은 “마침내 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호주제는 부부 갈등의 근본 요인으로서 여성과 남성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 왔다”고 지적한 후 “호주제 폐지는 우리 모두가 이루어낸 승리이며 앞



으로 다음 세대, 우리 딸들은 더 당당한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로서 호주제 폐지의 근거가 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초안을 작성한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당시 이화학당 이사장, 상담소 이사)은 “첫째, 아들 딸, 남녀의 가치와 역할, 신분, 지위가 근원적으로 같다는 것을 즉, 천부적으로 같다는 것을 국가 기관이 선언했다는 사실이며 둘째, 우리 여성들이 가족의 타자, 사회의 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자, 역사의 타자 자리에서 자아, 주체자로 환속되었음을, 말하자면 식민지 식민에서 자주국 시민으로 해방되었으며 셋째, 우리 사회의 진일보 즉 양성의 시각, 양성의 가치관, 양성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가족문화, 사회문화를 형성해 가는 한 차원 성숙된 한국문화의 원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끝으로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이제 한국 여성들도 가족 안에서 남성과 함께 존엄한 존재로서 양성평등 한 가정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호주제 폐지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담은 축사를 했다.

윤 명예총장은 가족법개정의 초기부터 이론적 바탕을 제시한 젊은 법학교수로, 현장에서 활약했던 상담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 가족법 개정운동의 두 주역이라 불렸으므로 이 날의 소회는 참으로 남달랐을 것이다.

또한 이태영 소장, 윤후정 명예총장과 더불어 법 개정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김주수 교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아래서 자란 사람은 민주시민이 될 수 없다”며 민주 사회의 근간으로서 민주적인 가족제도와 가족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주제 폐지에 대해 ‘학자로서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애실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차별과 억압의 상징인 호주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의 도래를 확신하다”는 취지의 축사를 했다.

이날 호주제 폐지 축하연에서는 장하진 여성부 장관 주최로 만찬을 마련하여 호주제 폐지에 힘써온 단체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여성 단체는 물론 각계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열리게 될 양성평등의 시대를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하였다.

편집부





혼 인 ⑤

●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다

Q 저희는 신혼 때부터 시부모와 함께 한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시부모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저는 부부만 따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합의에 따라 별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동거장소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가정법원에 동거장소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동거장소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동거장소지정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동법 제826조 제2항).

● 혼인 성립 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Q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많고 제 수입도 남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제가 독립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혼한다고 해도 제 재산은 남편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A 혼인을 앞둔 남녀는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재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혼인 중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29조 제2항 전문). 이는 일방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압력으로 불리한 계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29조 제2항 후문).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29조 제4항). 우리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제도는 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당사자들이 자유로 정할 수 있으며,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의 본질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재산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가사분담이나 이혼 조건 등을 정한 것은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될 수 없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내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혼인할 때 가지고 온 재산은 고유재산이다

Q 결혼 전 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였으니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인지요?

A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귀하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했더라도 귀하의 고유재산이므로 귀하가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1조).

●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Q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혼 후 함께 마련한 가재도구 등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A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함께 살면서 마련한 가재도구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이며, 이혼시 누가 가질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통한 법원의 결정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839조의2).

● 혼인 중 모은 재산의 처분을 막으려면

Q 남편은 회사에 다녔고 저는 학원을 운영하여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처럼 저 역시 집의 등기를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며 집을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남편이 집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

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막연히 재산 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에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됩니다. 또한 다른 한쪽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따라서 남편 명의의 재산취득에 어떤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민사집행법 제305조),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공유지분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 부분에 한하여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 부부 공동재산의 등기 방법

Q 저희는 초등학교 교사 부부인데 최근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이 집을 부부 공동소유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나중에 제 몫인 1/2만 따로 팔 수 있는지요?

A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소유 관계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유관계로서(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 각자의 지분이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처분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 후 판결에 의하여 처분 가능합니다(동법 제263조, 제264조, 제268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언니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인 큰 언니는 15년 전 선교활동을 하겠다고 외국으로 나간 후 연락이 끊겨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는 저와 부모님이 함께 살던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저와 둘째 언니는 아버지 명의의 집을 처분하여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주택 매도 대금은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행방불명된 큰언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언니를 제외한 상속인들 모두가 협의하였는데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나요?

A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자녀들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따라서 어머니와 3명의 자녀가 아버지가 남기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는 1/2, 자녀들은 각 1/3의 비율이 됩니다(동법 제1003조, 제1009조). 그러나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가능합니다(동법 제1013조). 다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동의할 수 없다면 협의분할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큰언니를 제외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상속부동산의 매매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 일부의 등기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등기예규 제535호). 이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부동산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동산은 상속인 모두의 공유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즉 상속인들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64조). 결국 상속등기 이후에도 부동산의 처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인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2조 내지 제26조). 하지만 이 경우 큰 언니의 상속분이 재산관리인이나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즉 큰 언니의 상속분을 보관하였다가 훗날 큰 언니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7조 제1항).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동법 제28조) 상속이 개시됩니다. 큰 언니가 외국에 선교활동을 간 후 마지막 생사를 안 이후 5년이 넘도록 생사가 불명하다면 언니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언니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큰 언니에 대해서 실종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큰 언니는 사망자로 간주되고 그 상속지분은 어머니가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이전등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다라 상담위원



책을 읽으며 꽤 오래 전의 일이 떠올랐다. 거의 20여 년 전의 일이다. 부부 모두 금수저 집안인 친구의 집에 다녀왔던 후배가 전해준 이야기 - 한창 뛰어놀 아이들은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단독 이층주택에서 해맑게 뛰어 놀고 아무런 경제적 구김이 없는 젊은 부부는 발도르프 교육을 실천하며 바르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념하고 있더라.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대치동쯤으로 전세를 얻어가서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대학입시가 끝나면 다시 이 아름다운 주택가로 돌아오거나 미국의 보딩스쿨에 가게 될 거라고 예측하며 유서 깊은 단독주택가의 긴 언덕을 걸어내려 왔다고 했다. 그리고 같이 갔던 후배 중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고 했다. “저들이 (정치적 올바름조차) 다 가지려고 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같이 웃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정색이 된다. 한창 화제의 중심이었던 어떤 분이 생각한다. SNS로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서 그 분의 모든 행적이 자신의 SNS로 미러링이 가능하기에 더 재미있는 분. 세상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고. 가재, 게, 붕어도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개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다. 아름답고 맞는 말이다. 이런 정치적으로 올바른 양반 같으니까. ‘돈도 실력’이라던 최 아무개의 딸 정 아무개 양의 발언이 차라리 솔직하게 느껴질 정도로 요즘의 상황이란 역겹기 그지없다. 직간접으로 경험한 입시 부정, 부정 채용도 없지 않지만, 무엇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을까 의문스러운 여러 사람들의 모습에 화가 나다가 허탈해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에 연말에 읽게 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 암담한 상황이 세계 공통의 것이라는 얇은 위로, 깊은 절망을 던져 주었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책의 소재목들만 훑어보아도 요점이 명확해진다.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라던가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가?”라는 문제제기 그리고 그에 의하면 ‘능력주의란 곧 현대의 세습귀족제’이며 그 결정적 과정에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는 조건의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와 겸손이다. 때로 너무 평범하고 진부해 보이는 진실이 정답일 때가 있고 그것을 관철해 내기는 정말 어렵다.

저자 마이클 샌델은 1953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으며 브랜다이스대학교를 졸업하고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를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대표 저서로 27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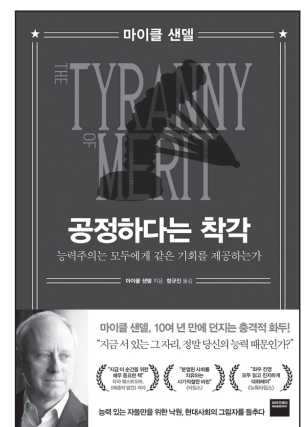
이숙현 편집부장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황규진 옮김

와이즈베리, 2020



야구소녀

감독 최윤태

출연 이주영, 이준혁, 염혜란, 송영규, 곽동연



최고구속 134킬로미터와 뛰어난 볼 회전력이라는 강점, ‘천재 야구소녀’라는 별명으로 주목받으며 여기저기 인터뷰도 참 많이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고교 야구팀의 유일한 여자 선수 주수인(이주영)은 졸업 후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지만, 이 야구팀에서 프로 지명을 받게 된 선수는 정호(곽동연) 한 명뿐이다. ‘여자치고는 야구 잘하네’가 아니라 ‘잘하는 야구선수’로 인정받고 싶은 수인에게 엄마 해숙(염혜란), 친구, 야구부 감독까지 모두 포기하라고 권한다. 그 무렵 야구부에 새로운 코치 진태(이준혁)가 부임한다. 그 자신도 프로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독립 구단에서 뛰다가 지도자로 방향을 선회한 진태는 수인의 존재가 자꾸 신경 쓰인다.

〈야구소녀〉는 즉각적으로 〈빌리 엘리어트〉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다. ‘감히’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려 분투하는 아이와 그 가족의 이야기. 단, 주수인의 조건은 빌리 엘리어트의 상황보다 훨씬 가혹하다. 한국의 야구계에선 ‘의학적으로 남자가 아닌 자가 야구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존재했고, 그 조항은 1996년에야 폐지됐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조항의 삭제가 곧장 프로야구 여성 선수의 등장으로 이어진 건 아니다. ‘취미’로 야구하는 여성들은 있지만 여성 프로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추어로서 국가대표로까지 뽑히긴 하지만, 그 좋아하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여성 선수들은 먹고살기 위한 본업을 병행해야만 한다. 주수인은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실 속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주수인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일단 갈등과 화해의 구조는 〈빌리 엘리어트〉와 비슷하다. 빌리의 타고난 재능을 알아본 발레 선생 윌킨슨 부인이 빌리에게 신뢰와 애정을 쏟아부으며서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왔고, 빌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자신의 재능을 믿지 않으며 현실에 안주하기를 종용하는 아버지였다. 〈야구소녀〉의 갈등 구조에서도 가장 큰 줄기는 코치 진태와 학생 선수 수인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가에 맞춰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경 쓰이는 조합은 수인과 엄마와의 관계다.

엄마 해숙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이 몇 년째 공인중

개사 시험에 떨어지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공장 식당에서 종일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하기 전인 어린 막내와 철없는 남편만으로도 삶이 벅찬데, 야구밖에 할 줄 모르는 큰딸은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계속 프로젝트에 도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안 되는 거면 빨리 포기해.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수인을 앞에 두고 던지는 엄마의 모진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체념하며 순응하게 되는 현실의 원칙이다. 학교라는 비교적 안온한 울타리에서 벗어난 후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모진 일상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엄마는, 딸이 더 힘든 길을 스스로 찾아들어가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수인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돈밖에 모르는, 자기 뜻대로 가족들을 쥐고 흔드는 폭군처럼 느껴진다.

사실 이 부분이 <야구소녀>에서 딱 하나 아쉬운 지점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수인의 항변은 먼저 살아본 자들이 뻔히 보인다면 충고하는 미래에 저항하는 무명의 영웅의 그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꿈을 향해 공을 던지는 수인의 분투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엄마에 대한 수인의 잔인한 평가가 전부 정당한 것처럼, 현실에만 아등바등하는 이들에 대한 정의로운 일갈처럼 전달되는 것이다. 남편과 딸의 꿈을 위해 종일 아득바득 일하며 자신의 삶을 전부 바쳐왔던 중년 여성 캐릭터를 향해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희생을 ‘나라도 내 자식 편이 되어야지’라는 모성애의 신화로 덮어씌우는 점은 이 영화의 다른 성취에 비해 아쉽게 느껴진다. 심지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수인의

꿈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가족 구성원으로 그리며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던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는 소녀의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영화로서 <야구소녀>의 선한 장점은 단연 빛나지만, 그 눈부심 속에 가려진 상처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게 된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2021년 1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 주신

이승주, 천정환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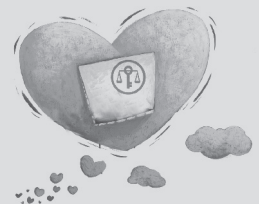
• 영어 상담을 해 주신

David M. Waters 변호사(사이버상담)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 상담소에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현장실습을 한 동국대학교 법학과 학생들과 지난 1월 11일부터 2주간 실무수습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윤 호 열

동국대학교 법학과

‘평범한 가정’, 제게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무미건조한 당연함이었습니다. 가족이 한 공간에 부대껴 살면서 한 번도 부딪히지 않을 순 없지만, 그것을 감안 하더라도 제가 살아온 가정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정확히는 현장실습을 통해 평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소로 걸려오는 많은 상담전화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당연히 생각했던 가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마주할 기회가 없었거나 지레짐작하면서 굳이 마주하지 않았던 사회의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제게는 물맛처럼 특별한 맛이 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럽도록 갈증하던 것이었습니다. 엄연히 존재했던 사회의 그 모습을 보고는 ‘외면’이라는 그들은 제 마음속에서 더는 자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이 사회 문제들에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저 과목이고 시험이었던 법이 현장에서는 살아 숨 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법은 사용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 방패가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존재의 의미가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다시 한 번 법학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은 검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도 있

고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방학 동안의 현장실습을 통해서 이러한 검을 올바르게 휘둘러 줄 수 있는 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법률을 상담하는 많은 분들을 보며 더욱 법률 공부에 대한 의욕을 다졌습니다. 한편 실습기간 중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률구조신청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경험이 매우 보람되었습니다. 사회 문제라는 현실의 직면과 법의 쓰임의 체험은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저에게 로스쿨 진학이라는 목표가 자라게 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진행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현장실습 인턴 활동은 제가 앞으로 걸어갈 삶의 방향에 꽃피울 수 있는 양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 서 윤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첫 오리엔테이션 이후 저는 엄청난 걱정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가족법에 관련된 큰 상식이 없는데 어떻게 안내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역시 가정문제를 호소하는 전화를 받게 되면서 저는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고민을 말씀하시거나 해결방법을 물어보시는 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담위원께 전화연결을 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하는 아주 단순하고 작은 일이었습니다. 더 큰 위로와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협의이혼 신청서류와 재판 이혼의 관할에 관한 간단한 질문도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매일 30통 넘는 안내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위원께 상담전화를 연결해 드리고, 상담내용을 현장실습을 함께 하는 동기들과 함께 공유하고 답변을 스스로 찾아보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정법률사례집과 <민원상담 메뉴얼>을 몇 번이나 뒤적거리고 책에도 없는 부분은 인터넷까지 찾아보며 모르는 부분에 대한 공백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 하셨던 분이 조금은 나이진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땐 정말 뿌듯했습니다.

실습 내용 중 서울가정법원 내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장 상담실에서 상담참관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이혼 및 양육비와 위자료 판결을 받은 후 오랜 기간 동안 위자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내담자가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지연 이자 계산이 어렵다며 이를 도와 달라고 하셔서 지연이자계산을 도와드렸습니다. 직접 내담자 분을 도울 수 있었던 보람되고 뿌듯한 경험이었습니 다. 혹시나 제가 잘못 계산할까봐 노심초사했지만 잘 해결되어서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도움을 드렸지만 제가 느끼는 보람은 정말 컸습니 다. 4주 동안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제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과 제 작은 지식이 도움을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은 정말 제 대학생활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멋진 일이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어 다양한 업무를 돕고 배우며 관련 법지식을 습득하며,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저의 진로를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장님 이하 선생님들께 실감 나는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점과 같은 진로를 생각하는 동기와의 실습생활은 미래의 꿈을 향해 걸어가는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라는 낯선 곳에 발걸음하기 직전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방향성을 제시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문 예 빈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과 학부생으로 3년을 보냈지만 법의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했을 뿐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공부를 하며 많은 판례들을 읽어봤지만 암기하기 바빠 그 판례가 나오기까지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고, 어떤 소송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꿈이었던 법조인을 향해 달려 나가던 중, 끝없이 반복되는 암기에 지쳐버리는 상황이 찾아왔다. 암기도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수많은 법들을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활용해 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며 내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되었다.

부푼 기대를 안고 드디어 출근 첫 날이 되었다. 실습업무에 대한 설명 특히 전화 상담 업무 연수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혼·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지식도 부족하였기에, 상담 전화를 받는 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다.

그러나 상담소에서 출간한 ‘어떻게 할까요’ 가정법률상담사례집과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화 상담 대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가정법률상담사례집에 나온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 나는 상담사례집의 목차를 머릿속에 두고, 전화가 걸려오면 그에 해당하는 상담사례를 찾아 읽으며 공부하였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내 한국가정법률상담 출장상담실에서의 상담 참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한 내담자가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이에 대해 묻고자 상담실을 찾았다. 피성년후견인은 신체가 아닌 정신적 능력에 제약이 있어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법원에 참석하여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려워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진 10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보정명령이었다. 보정명령을 받아 당황한 내담자에게 명령의 의미와 제출 서류를 차근차근 안내해드리는 선생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상담참관 뿐만 아니라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 가사소송·비송관련 신청서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이혼소장, 인지청구의 소, 친생부인의 소, 혼인무효의 소 등의 서식을 실제로 접하며 상담사례집에서 보았던 사례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교육프로그램 업무 연수 중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속 기록 작성과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내용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내용을 정리하며,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어떤 갈등이 겪었고, 왜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상담을 하며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등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상담을 통해 6개월 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기회였고 이를 글로 정리하는 일이 참 보람되었다. 상담과 교육을 통해 행위자가 반성하고 개선되었다는 결론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 밖에도 가사사건 관련 판결과 법률안 스캔하기, 상담소에서 진행한 심포지엄 자료집 스캔하기, 상담소 관련 기사 정리하기, 현관에서 내담자 안내하기 등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시간에 비해 배우고 느낀 것이 너무 많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정말 감사드린다. 특히 2021년의 시작을 상담소와 함께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법학공부와 진로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게 주어진 업무를 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 전화 상담 관련 업무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내담자는 물론이고 실습생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직업적 사명감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즐거운 경험이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학공부에 지쳐 목표가 흐릿해지던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었다.

‘법’은 모르면 손해이다. ‘법’은 우리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가까이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법조인이 존재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실습을 통해 나는 꼭 변호사가 되어 다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봉사하고 싶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실습을 통해 첫걸음을 떼었으니 학기 중에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봉사를 하며 그 다짐을 바로 실천해 보고자 한다.

박 수 화

동국대학교 법학과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과 달리, 사인 사이를 규율하여 너무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사법은 저에게 막연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언젠가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장실습이 그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원하였습니다. 처음 실습을 시작할 때에는 제가 사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고, 함께하는 실습생들이 모두 저보다 학년이 높아 뒤처질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한 분 한 분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이끌어주시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셔서 제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습 시작 전에는 한 달 동안의 실습기간이 꽤나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주에는 출근길이 힘들어 주말만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며 상담소에서 배우는 것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제가 아는 것이 많아지니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달의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현장실습을 지원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실무 법학을 겪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로 소장 작성하는 법, 본인진술서, 증인진술서 등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느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

행했던 전화 상담 연수는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전화를 받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출간한 ‘어떻게할까요’ 가정법률상담사례집을 열심히 읽으며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궁금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궁금증을 다른 실습생과 공유하고 선생님께 질문하여 답을 얻으면서 가족법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전화를 하시는 분들의 법률문제가 어떤 것을 질문하는 것인지도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담전화는 매우 다양하고 매우 전문적인 송무관련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책을 찾아보며 법률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더욱 파고들어 교과서를 읽으며 공부했던 시간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특히 상담 전화를 한 분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실 때 정말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작은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저에게 감사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슴 벅찼습니다. 제가 법조인을 꿈꿨던 이유 자체가 누군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제 진로를 고민하며 방황하고, 법학이 저에게 맞는 길인지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며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제가 이런 감정과 생각을 느끼는 것 때문에 법학을 좋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위원께서 ‘우리는 내담자에게 터널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줄 뿐이고 빠져나올지 말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몫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늘 상담은 무언가 해결책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잘못된 법률상담은 내담자에게 소중한 권리회복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기도 하기에 상담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법률 지식

부터 크고 작은 교훈까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곳에서 느꼈던 이 감정을 기억하며 저도 꼭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신 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북한인권 관련 일을 하며 법이 ‘인권존중’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음을 느꼈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개선에 관심이 생겨 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스쿨에서의 첫 실무수습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게 된 것은 입학 당시의 초심을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사연과 아픔을 가진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가정 폭력에도 외부에 알려지는 게 창피해 참거나 경제적 문제로 쉽사리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내담자들에게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꼈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담자 상당수는 불행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감정이 북받쳐 진술이 장황해지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일부 진실 되지 않아 보이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소장과 상담참관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러한 진술 속에서 ① 내담자의 욕구 ② 정확한 사실관계 ③ 법적 쟁점 파악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특별법 Q&A 과제를 통해서도 개정 전·후를 비교, 개정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정폭력의 특성을 더욱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조치 기준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 개정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 직장 등 특정 장소만을 기준으로 한 접근금지조치는 피해자가 이동하는 등의 경우 피해자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작성하면서는 과제를 통해 익힌 가정폭력특별법이 실제로 피해자 구조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소한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주신 박소현 부장님, 변호사님들과 그 외 상담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담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설립되어, 가족법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법률구조기관입니다. 1979년 결성된 백인변호사단과 협력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1988년에는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1997년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위헌을,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 내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이후로도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 상담, 교육, 업무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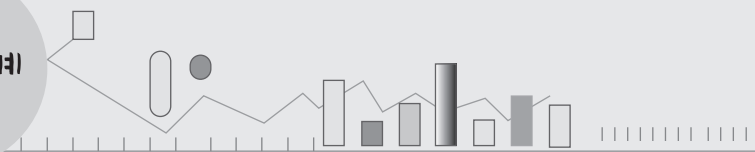
저는 처음 실무수습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가정과 법률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법질서는 가정 내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나 부모자식 사이의 불화(가정폭력)는 일반적으로 형사상의 문제라기보다 다만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시적인 갈등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수습을 진행하면서 법질서가 가정 내의 일에 개입하여야 할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상대방은 합의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고통 받는 마음은 단순히 갈라선다고 해서 치유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재산이나 경제적 주도권을 모두 외도한 쪽이 가지고 있다면, 병어리 냉가슴 앓듯 외도를 두고봐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회의 도덕을 상징하는 법률이 방관한다면 공서양속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서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한 까닭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재산 분할에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처벌과 치유, 보호조치가 확대되면서 점차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을 가정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에서 점차 파탄주의적 사유를 넓게 인정하면서 가정문제 해결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법률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적극적으로 가정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법률문제의 새로운 양상은 그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제적인 질서에서 파생되어 나온 문제가 심각했다면,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른 법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도 종류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잦고, 한 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족관계와 경제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미 나타난 다양한 사회형태를 법적 제도 속에 포섭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정법률상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법률상담이 표층적인 층위에만 머무를 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았겠지만, 오늘날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법률지식이 널리 보급되는 상황에서, 내담자들의 욕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심도 있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가정법률상담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이스라엘 아키바 토르 Akiva Tor 대사와 배우자 나오미 토르 Naomi Tor 박사, 본소 방문

본소에서는 1월 5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배우자 나오미 토르 박사를 맞이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최근 한국에 부임하였고, 나오미 토르 박사는 이스라엘 중재협회장을 맡고 있다.

간담회에서 본소 궐배희 소장은 상담소 65년의 역사에서 주한 외교사절의 방문은 처음이며 더욱이 세계인들의 관심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 대사 부부의 방문은 상담소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대사 일행을 환영하였고, 아키바 토르 대사는 본소의 역사와 오랜 기간에 걸친 엄청난 법률구조사업에 경의를 표하였다. 이어진 의견 교환에서 아키바 토르 대사와 나오미 토르 박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다민족·이종교 그룹-에 기인한 분쟁 중재 필요성과 50개 중재센터, 이스라엘의 결혼 및 이혼제도, 성평등, 가정폭력 처리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본소에서는 본소의 운영 및 재원, 우리나라 가족 및 가족법의 새로운 경향, COVID-19가 미친 가정폭력예의 영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궐배희 소장과 아키바 토르 대사는 양국의 가족법 특히 이혼문제 등과 관련 자료 교환 등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간담회에 이어 대사 일행은 본소의 교육실과 상담실, 사진전시 등을 돌아보았다.

간담회를 제안하고 대사 부부를 수행하여 통역을 전담한 김미영 대사 수석비서는 본소 백인변호사단의 일원인 김태

주 변호사의 배우자로, 평소 본소에의 관심과 애정이 간담회를 성사시킨 계기가 되었다.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이 배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

본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본 소의 법률구조 사업을 이해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실무지식을 함양하는 학습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와 공익,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수습을 하계와 동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동계방학을 맞이하여 1기 실무수습이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기 실무수습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실습에는 모두 4명의 학생이 참여하는데, 실습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실무수습 기간 및 실습생 명단

1기(2명) 2021년 1월 11일 ~ 1월 22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양 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윤신영

2기(2명) 2021년 1월 25일 ~ 2월 5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김시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진혜빈

본소, 올해 첫 변호사회의 가져

2021년 첫 본소 변호사회회의가 1월 19일 광배회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김민선 변호사, 손명진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결된 사건에 대한 보고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검토 등이 있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

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 대학생 현장실습

- 동국대학교 법학과

(12/29-1/26) 문예빈, 박수화, 윤호열, 정서윤,

(1/27-2/25) 오동석, 윤진호, 이종원, 조현승

소니아 스트론 Sonia Reid Strawn (이선희) 선교사 소천

상담소와 자원봉사자로서 오랜 인연,
이태영 선생님 탄신 백주년 기념 추모문집까지 함께 해



상담소의 오랜 자원봉사자였던 이선희 선교사가 2021년 1월 24일 82세로 미국에서 소천 하였다.

고인은 뉴욕 주 감리교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뉴욕주립대와 드류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합감리교 세계선교부 선교사로 선교훈련을 받는 동안 부군인 드와이트 스트론 (서도륜) 박사와 결혼하였다. 1967년 한국에 입국하여 이화여대, 배화여대, 감리교신학대에서 가르치고, 1977년부터 은퇴 후 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이태영 박사를 도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가족법개정운동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선교사업에 헌신하였다.

이선희 선교사 및 부군 서도륜 박사와의 귀한 인연에 대해 이태영 박사는 1991년 발간한 『나의 만남 나의 인생 이태영 자전적 교유록』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으며 이선희 선교사 또한 지난 2014년 이태영 선생님의 탄신 백주년을 맞아 발행한 추모 문집 『사랑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이태영』에 ‘이 박사님과 보낸 나날들 육대주를 누빈 한국 여성 변호사’를 기고하여 한국에서 상담소, 이태영 선생님과 활동에 대해 회고하였다.

이선희 선교사는 2014년 은퇴 후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상담소는 자원봉사자로서 상담소 활동에 최선을 다한 고인과의 귀한 인연을 소중하게 회고하며 평온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1/2-2/28) 전단에, 이승현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월18일과 27일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사건 조정에 참여하였다. 26일에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토론발표를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월 1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사건과 이혼등 사건을, 22일에는 이혼 사건을 각 조정하였다. 28일에는 서울권역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회의 (zoom 화상회의)에 참석하였다.

김용덕 변호사(전 대법관) 본소에 연이어 기부



김용덕 변호사(전 대법관)가 상담소 법률구조 사업의 운영후원금으로 이백만원을 기부하였다.

지난해 이어 연이은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상담통계

총상담 5,250			
법률상담 (4,664)			
면접	전화	인터넷	지상
910	3,630	123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463	60		63

• 인터넷 정보 이용

21,351

2021년 1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250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664건(88.8%), 화해조정 463건(8.8%),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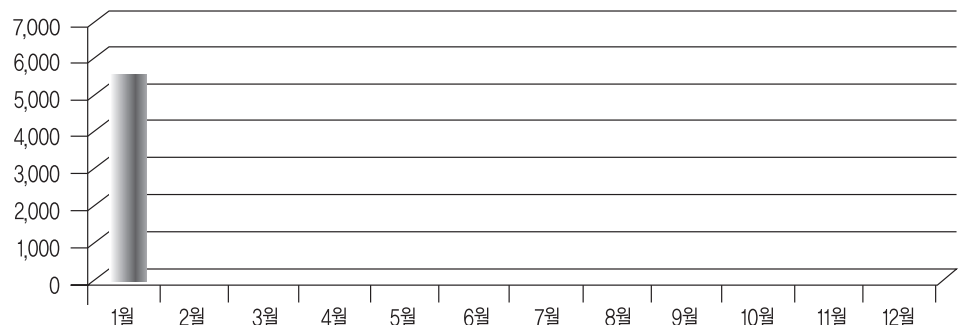
등 서류작성 60건(1.2%), 소송구조 63건(1.2%)이었다.

법률상담 4,66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4.2%→4.7%), 사실혼해소(0.9%→1.2%), 양육비(7.0%→7.4%), 면접교섭권(2.4%→2.9%), 인지(0.9%→1.2%), 친생부인(0.9%→1.0%), 파혼(0.1%→0.3%), 이혼무효·취소(0.2%→0.3%), 친양자(0.8%→0.9%), 성변경(0.8%→1.4%), 미성년후견(0.5%→0.7%), 가사절차(5.8%→6.1%), 가사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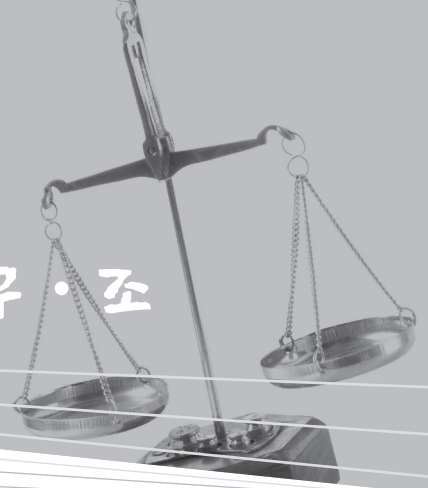
(8.9%→1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2%→0.3%), 부동산(0.2%→0.3%), 채권·채무(0.5%→0.7%), 파산(1.5%→2.2%), 개인회생(0.4%→0.5%), 민사절차(0.0%→0.1%), 민사기타(0.6%→0.8%),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66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10건(19.5%), 전화상담 3,630건(77.8%), 인터넷상담 123건(2.6%),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1년
월별
총건수



소·송·구·조



2020년 소송구조 결과보고

● 총 건수 : 1,015건

* 사건별 분류

가사

(건수)		
1	이혼	449
2	사실혼해소	1
3	위자료/재산분할	3
4	양육친권	50
5	양육비	152
6	면접교섭	7
7	성년후견	1
8	미성년후견	20
9	인지	3
10	친생부인	7
11	친생자존부	18
12	입양/친양자입양	1
13	유언/상속	5
14	가족관계등록부	5
15	가압류	53
16	사전처분	33
17	가사기타	45
소 계		853

민사

(건수)		
1	개인파산/면책	147
2	개인회생	5
3	민사기타	8
소 계		160

형사

(건수)		
1	형사기타	2
소 계		2

* 소송구조 처리 결과

구분	진행중	소계	승소				패소	각하	취하	사임	기타
			판결/결정	면책결정	화해권고	조정					
건수	715	258	159	53	21	25	5	3	20	3	11

* 2020년도 종결사건(전년도 이월 포함)

구분	소계	승소				패소	각하	취하	사임	기타	총계
		판결/결정	면책결정	화해권고	조정						
건수	413	240	93	31	49	10	4	36	4	18	485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폭력적 성향을 보이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호주 국적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375

담당 : 김지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4세)와 호주 국적자인 피고(남, 36세)는 2015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5세, 3세)을 두고 호주에서 생활하였다. 원고가 2014년 사건본인1을 출산한 이후 가사와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한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피고는 원고의 노트북을 집어 던지고 휴대전화를 파손시키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피고는 호주 법원에서 주 1회 상담치료를 명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태도는 변함이 없었으며 신고한 원고를 원망할 뿐이었다. 이후 원고는 동생 결혼식을 기회로 사건본인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SNS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원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옷이 필요하여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보내준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0.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7,200,000원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0. 10.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극심한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108

담당 : 강윤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1세)와 피고(남, 51세)는 1995년 1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2013년경 피고는 가족의 생계 수단인 가게 집기와 집안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다. 피고의 폭력적 성향이 더욱 심화되어 2014년 5월경에는 원고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당시 아들 양육을 위하여 참고 견디었으나 운동선수 출신인 피고의 무자비한 폭력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2016년 2월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비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 모르게 발생시킨 사채, 생활비 채무로 인하여 2016년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7년 5월경 면책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8.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0. 03. 12. 경 소송구조 의뢰를 받고, 원고와 연락하여 소 제기 및 진행관련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2020. 03. 16.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이 두려워 피고 측에 원고의 주소지가 공개되는 것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소장 첨부서류에 현재 원고의 주소지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가림처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불명이고, 초본도 거주불명자로 표기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잘 아는 제3자 작성 진술서 제출을 하라고 보정 명령을 내려 아들 및 제3자 지인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폭행이 원고 자신뿐만 아니라 원

고의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사유를 기재하고 제3자의 진술서는 변론기일에 지참해 가서 판사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 7.경 변론절차를 거친 후, 2020. 8.경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대리인은 판결 당일 원고에게 소송결과를 전달하였으며,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위하여 2020. 8. 17.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인 2020. 9. 2. 확정증명원을 받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강운영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

법률구조 2020-244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7세)과 상대방(남, 46세)은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8세, 17세)을 두었으나 2010년 5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상대방과 상대방의 어머니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였고, 사건본인들을 방치하다가 결국 사건본인들의 집을 청구인의 집 문 앞에 두고 도망갔다. 청구인은 2013년 11월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4년 2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지급 시기 또한 약속된 날짜를 지키지 않아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 10월 이후에는 그마저 주지 않아 청구인은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 12. 10.)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① 2020. 5. 이전까지 발생한 7,468,812원을, ② 2020. 5.부터 2020.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10,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2021. 2.부터 2022. 6.까지는 월 55만 원씩, 2022. 7.부터 2022. 12.까지는 월 150만 원씩을 분할하여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2020. 12.부터 2021. 1.까지는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합계 150만 원씩을,

나. 2021. 2.부터 사건본인2가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는 월 95만 원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은 모에 대한
감치 결정**

법률구조 2020-349

담당 : 이용락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신청인(남, 38세)과 피신청인(여, 33세)은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2세, 9세)을 두었으나, 2015년 5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신청인은 이후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2017년 7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5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정 당시부터 양육비 전액을 입금하지 않고 사건본인 1명의 금액만을 입금해왔고, 2018년 9월부터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이행의무위반으로 감치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0. 12. 16.)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10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서울동부구치소로 정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